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(김종욱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최신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」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·보완함으로써 신뢰 받는 오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)
- 심사위원회에서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·조사 의뢰 의무화(안 제12조)
- 부당지시에 대한 직원보호 강화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3. 규칙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8월 2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(규칙)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”를 “공무국외출장보고서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의장은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누리집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-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	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<u>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</u> ---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	제11조(공무국외출장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. <u><단서 삭제></u>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</u>	<u><삭 제></u>
4. (생략)	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5. <u>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</u>	4. <u>제5항</u> -----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 ①
(생 략)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
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
·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, 심
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
기재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
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
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
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
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
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
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
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
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
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
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
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
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
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
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
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
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2조(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공무국외출장보고서-----

③·④ (생략)

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누리집,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후관리 등)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의장은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후관리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누리집,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

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
아니된다.